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31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김남희 · 서영석 · 전진숙
김기표 · 이수진 · 백혜련
박희승 · 김 윤 · 남인순
박민규 · 정태호 · 서미화
김선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복무를 마친 날,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겨 사후 급여 지원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3조 원,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신기간과 초기 양육기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약 9개월의 임신기간과 최대 12개월 또는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 나.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자녀 한 명 당 9개월을 상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 다.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을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2개월”을 “21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4개월”을 “42개월”로, “18개월”을 “27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 하고,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00조의5(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을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로 본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생략)

<신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1. -----
-----21개월-----

2. -----
-----42개월-----
-----27개월-----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부-----.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가입자가 「남녀고용평

<p><u>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u></p>	<p><u>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u></p>
---	--